

1-1 2019년 건강검진사업 주요내용

사업명	업 무	2018년	2019년
공 통	관련 고시	- 건강검진 실시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228호, '17.12.20)	- 건강검진 실시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64호, '18.12.19)
	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업무위탁 관련	-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 수행 ※ 보건복지부가 위탁수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공단)에게 지급 ※ 보건복지부와 공단간 MOU 내용 -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일반건강검진(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포함), 영유아건강검진과 관련하여 검진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보건복지부 장관(시·도, 시·군·구), 공단이 공유함	
	검진비 예탁금관리	- 시·군·구 보건소는 매분기 첫째월(1분기는 둘째월) 20일까지 공단에서 지정한 보건소별 수납가상계좌로 건강검진비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분) 입금(예탁) ※ 보건소별로 부여되는 입금계좌는 문서로 통보 - 공단은 예탁금 현황, 예탁금 집행 및 부족현황, 건강진단비용 미지급 현황을 월 1회 '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'으로 통보 - 시·군·구 보건소는 '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'에서 건강검진 실적 및 건강검진비 지급 실적을 파악하여 검진비 과부족 여부를 확인	
	예탁 검진 비용 환수	- 검진기관 휴·폐업 및 6개월간 미청구 사유로 전산상계가 불가능한 건은 특별 자치시·도, 시·군·구로 내역 통보 ⇨ 의료급여법 제23조(부당이득의 징수)에 따라 사후관리	
1. 일반건강 검진사업	의료급여 일반건강검진	- 만19세 ~ 만64세 세대주 - 만40세 ~ 만64세 세대원	- 만19세 ~ 만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
	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	- 만66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	- 만66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
	예산 (국비 기준)	•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 : 5,266백만원	•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 : 7,650백만원